

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(제정 1996. 6. 18.)

(전면개정 2020. 11. 17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한다. 다만, 외국인 신·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신·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.

1. 입학요강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4.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
5. 입학정보 자료분석과 개발에 관한 사항
6. 학생부종합전형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③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입학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외국인 신·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) ① 제2조의 단서에 따라 본교에 외국인 신·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국제교류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준용한다.

이 규정은 199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